#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0

발의연월일: 2025. 5. 26.

발 의 자: 박수현·서삼석·이개호

김종민 · 조인철 · 윤후덕

이건대 · 조계원 · 양부남

이연희 • 양문석 • 박용갑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 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를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로 한다.

제4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려는 경 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여가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지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지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지정의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3(낚시여가지구에 대한 특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라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지구 내의 낚시 도구·시기·대상 및 수산동물의 포획·채취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여가지구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u>낚시문</u>화를 조 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 성하고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 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5. (생략) 6. (종전의 제5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낚시여가지구의 지정 <신 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 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

현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하려 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 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낚시여가지구의 지 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여가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 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 지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또는 낚시여가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 유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지구를 변경하여 고시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지 구의 지정 신청의 방법・절차 및 지정의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제44조의3(낚시여가지구에 대한</u> <u>특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u>

<신 설>

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라 낚시 여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 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 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지 구 내의 낚시 도구·시기·대 상 및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낚 시여가지구의 조성 및 운영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